

감 사 의 건 서

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2020년 회계연도 업무에 대한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예산·회계에 관한 의견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 등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세입·세출예산으로 편성하고 지출해야 합니다. 2020년 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자료 등 재무제표, 부속 관계 서류를 열람하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·도비 보조금 등 재원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절차를 관련 회계 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적절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- 또한,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각종 사업 및 대회(행사) 취소에 따른 보조금 과다 불용액 발생 문제에 사전 대비를 위하여 조기 반납을 통한 2020년도 어려웠던 전라북도 재정 확충에 일조하며 효율적 예산 활용 및 집행에 노력을 기울인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
2. 조직 운영에 관한 의견

- = 공공기관 사회적 정책 현안의 각종 해당 법령 규정 제·개정 이행 요청에 따른 규약 및 제 규정 제·개정 절차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,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 특히, 지난 감사 결과사항과 관련하여 제 규정(인사위원회, 운영위원회, 생활체육위원회 등) 운영 규정 확인을 통하여 개선요구 사항을 적절히 이행하였음을 검토하였습니다.

